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429
----------	-------

발의연월일 : 2019. 9. 10.

발의자 : 신동근 · 송갑석 · 이동섭

김민기 · 신창현 · 강훈식

서형수 · 금태섭 · 서영교

김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어 해당 사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소관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당연직 위원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u>국무총리</u>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7.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u><신 설></u></p>	<p>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① --- -----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 ----- -----.</p> <p>1. ~ 7. (현행과 같음)</p> <p>② ----- ----- ----- ---<u>구성한다.</u></p>
	<p>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p>1.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과 대통령령으로</p>

	<p><u>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u> <u>차관급 공무원</u></p> <p><u>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u></p> <p><u>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u> <u>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u> <u>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u> <u>람</u></p> <p><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p>
<u>③ (생략)</u>	